

#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고 건 인  
국 무 총 리

2004년 4월 19일

국 무 총 리 고 건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이 헌 재  
장 관

## ○대통령령 제18365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제2  
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2. 연체채무가 상환 또는 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 또는 변제방법

②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라  
함은 만 18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가 확인될 것

④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이라 함은 신용  
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  
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법 제1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없는 경

제15672호

관

부

2004. 4. 19. (월요일)

우에는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의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의8 내지 제6조의10을 각각 제6조의10 내지 제6조의12로 하고, 제6조의8 및 제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의10(중전 제6조의8)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6조제7항”을 “법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제6조의8(모집인의 준수사항)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모집인임을 알릴 것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에 모집인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수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중 “제6조의7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제2항제2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법 제16조제8항”을 “법 제16조제10항”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6조제1항제7호”를 “법 제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동조제1항제1호(신용카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채권을 제외한다.

1. 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2. 채무자의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전 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법 제50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④법 제50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구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23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법 제1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인에 대한 통지

##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시설대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③(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6월 30일까지 금융감독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이유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여신 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7065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준수사항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수행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용카드업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함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 (영 제6조의7제4항).
- 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설명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정함(영 제6조의8 신설).

다.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던 것을 그 통지를 받기 60일전부터 그 책임을 지도록 함(영 제6조의9 신설).

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한 대출,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대출을 제외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별 평균잔액이 여신전문금융업무와 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양수·관리·회수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분기별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초과분은 2008년 12월 31까지 해소하도록 함(영 제17조 신설 및 영 부칙 제3항).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고 건 인

2004년 4월 19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허 상 만  
농림부장관

◎대통령령 제18366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중개정령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8266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 72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도 이 영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은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단가에 경영이양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이양촉진을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자를 63세 이상 69세 이하로 조